

# 학교법인 동서학원

##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1 인

1. 일 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후2:00~3:15, (회의소집 통보일: 2019년 9월 19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추만석, 양상백,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1명) : 양한석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1명) : 문승엽

4. 회의안건

(1) 심의 안건

1)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2) 동서대학교

①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 기자재 폐기 승인 심의 건

③ 전임교원 새로임용 및 승진임용(정년포함) 심의 건

④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심의 건

3) 부산디지털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4) 사상구노인복지관

①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수정사업계획(안) 및 2019년 제4차 추경추경예산(안) 심의 건

③ 사상구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 심의 건

(2) 보고 사항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은 법인 행정실장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2) 행정실장은 재적이사 8명중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3)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 개회를 선언한 후, 전차 회의록 보고를 행정실장에게 요청하자, 보고하고 이의 없음을 접수하다.

(4) 이사장은 오늘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1)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지시하고,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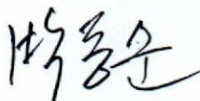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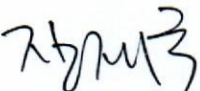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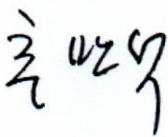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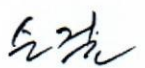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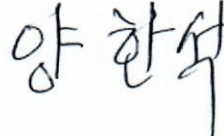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양상백	이사	이순걸
-----------	-----	-----	----	-----	----	-----

- (2) 행정실장은 법인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사들에게 배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임면”을 “임용”으로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남정보대학교 직제 변경에 따른 하부조직 변경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조교위원 추가 및 의장 선출방식 변경을 정관에 명시코자 한다고 설명하다.
- (3) 강정호이사가 정관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하부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를 하자, 양상백이사가 재청하니, 이순걸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가결이 되다.
- (4) 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정관 변경(안)이 붙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5)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오병태이사가 이사장, 양상백,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이순걸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1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9. 27.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사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장 제 국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추 만 석		이 사	양 상 백	
이 사	강 정 호		이 사	이 순 걸	
감 사	양 한 석				



## 법인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 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p>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면</u> 및 교직원 징계위원, 일반직원 재심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p>	<p>제 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p> <p>② -----</p> <p>5. ----- <u>임용</u> -----</p>
제 1 관 임 명	제 1 관 임 용
<p>제 34 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하되</u>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한다</u>.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되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심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 34 조(임용) ① -----</p> <p>----- <u>임용하되</u> -----</p> <p>② -----</p> <p>----- <u>임용한다</u>. -----</p>
<p>③&lt;생략&gt;</p> <p>④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당해 학교의 장이 <u>임면하</u>며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③&lt;생략&gt;&lt;좌동&gt;</p> <p>④ -----<u>임용</u>-----</p> <p><u>하</u>며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⑤&lt;생략&gt;</p> <p>⑥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은 당해 학교의 장이 <u>임면하며</u>,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p>	<p>⑤&lt;생략&gt;&lt;좌동&gt;</p> <p>⑥ -----</p> <p>----- <u>임용하며</u>, -----</p>
<p>⑦&lt;생략&gt;</p> <p>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면권자가</u> 교원을 <u>임면하였을</u> 때에는 <u>임면한</u>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lt;생략&gt;&lt;좌동&gt;</p> <p>⑧ ----- <u>임면권자가</u> -----</p> <p>----- <u>임용하였을</u> ----- <u>임용한</u> -----</p>
<p>제 2 관 신분보장</p> <p>제 35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u>임면권자</u>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 2 관 신분보장</p> <p>제 35 조(휴직의 사유) -----</p> <p>----- <u>임면권자</u>는 -----</p>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순	이사	양 상 익	이사	이 승 걸
------------	-----	-------	----	-------	----	-------



현 행	개 정
<p>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① &lt;생략&gt;</p> <p>② <u>임면권자</u>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1. &lt;생략&gt;</p> <p>2. &lt;생략&gt;</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u>임면권자</u>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lt;생략&gt;</p> <p>⑤ <u>임면권자</u>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p>	<p>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① &lt;생략&gt;&lt;좌동&gt;</p> <p>② <u>임용권자</u>는 ----- -----.</p> <p>1. &lt;생략&gt;&lt;좌동&gt;</p> <p>2. &lt;생략&gt;&lt;좌동&gt;</p> <p>③ ----- -----<u>임용권자</u>는 ----- -----.</p> <p>④ &lt;생략&gt;&lt;좌동&gt;</p> <p>⑤ <u>임용권자</u>는 ----- -----.</p>
<p>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임면권자</u>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lt;생략&gt;</p> <p>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u>임면권자</u>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⑥ ----- <u>임용권자</u>는 ----- -----.</p> <p>⑦ &lt;생략&gt;&lt;좌동&gt;</p> <p>⑧ ----- ----- <u>임용권자</u>는 ----- -----.</p>
<p>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p> <p>제 43 조(인사위원회 기능)</p> <p>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u>임면</u> 제청하고자 할 때의 <u>임면</u>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p> <p>2. 장사의 <u>임면(재임용 포함)</u> 검증심사의의결에 관한 사항.</p>	<p>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p> <p>제 43 조(인사위원회 기능)</p> <p>① -----.</p> <p>1. ----- <u>임용</u> ----- ----- <u>임용</u> -----.</p> <p>2. --- <u>임용(재임용 포함)</u> -----.</p>
<p>제 53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u>임면권자</u>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 53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u>임용권자</u>가 ----- ----- -----.</p>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 동 순	이사	양 상 겟	이사	이 승 길
-----------	-----	-------	----	-------	----	-------



현 행	개 정
<p><b>제 55 조(징계의결)</b></p> <p>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면권자에게</u> 통고하여야 한다.</p> <p>③ <u>임면권자가</u>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u>임면권자가</u>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p>	<p><b>제 55 조(징계의결)</b></p> <p>① &lt;좌동&gt;</p> <p>② ----- ----- <u>임면권자에게</u> -----.</p> <p>③ <u>임면권자가</u> ----- ----- -----<u>임면권자가</u> ----- -----..</p>
<p><b>제 76 조(하부조직)</b></p> <p>① 전문대학에 <u>교목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취업진로처, 입시관리처, 종합행정처, 건설본부, 재무본부, 홍보실, 대외협력실, KIT사랑의봉사센터</u>를 둔다.</p> <p>② <u>교목실장은</u> 교목으로 보하며, <u>교무처장, 학생처장, 취업진로처장, 입시관리처장, 건설본부장, KIT사랑의봉사센터장</u>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u>기획처장, 종합행정처장, 재무본부장은</u>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u>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및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단장은</u>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16.3.28)</p>	<p><b>제 76 조(하부조직)</b></p> <p>① -----, <u>기획처, 대학혁신본부,</u> ----- -----.</p> <p>② -----, <u>대학혁신본부장, 교무처장,</u> ----- ----- -----, <u>대외협력실장은</u> ----- -----.</p>
<p><b>제 82 조(평의위원회의 구성)</b></p> <p>① 평의위원회는 <u>교원·직원</u>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u>건학이념을</u> 구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 4인</li> <li>2. 직원 3인</li> <li>3. &lt;신살&gt;</li> <li>3. 학생 2인</li> <li>4.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인</li> </ol>	<p><b>제 82 조(평의위원회의 구성)</b></p> <p>① ----- <u>교원·직원·조교</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u>조교 1인</u></li> <li>4. -----</li> <li>5. ----- 1인</li> </ol>
<p><b>제 84 조(평의위원회 의장 등)</b></p> <p>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p> <p>②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정교수 직급을 가진 자 중 평의원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 1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p> <p>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법인의 협의체 구성시 평의위원회의 대표자가 된다.</p> <p>④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p>	<p><b>제 84 조(평의위원회 의장 등)</b></p> <p>① -----.</p> <p>② ----- <u>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u> ----- -----</p> <p>③ -----.</p> <p>④ -----.</p>

간서명 대표	이사장	<u>박동운</u>	이사	<u>양상익</u>	이사	<u>이승걸</u>
-----------	-----	------------	----	------------	----	------------

현 행	개 정
<신설>	<p>부칙</p> <p>(1)(시행일) 이장관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2)(조교평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8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교평의원은 시행 후 3개월 내 구성하고, 제85조 제2항의 보선평의원의 임기를 준용한다.</p> <p>(3)(평의원의 잔여임기 경과조치)제8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평의회로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구성된 평의원은 잔여임기를 보장한다.</p> <p>(4)(평의원 의장선출 경과조치)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선출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임명된 의장은 평의원의 추인으로 호선을 갈음한다.</p>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동준	이사	양상백	이사	이수경
-----------	-----	-----	----	-----	----	-----